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하나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5번지(진관동 97번지)에 둔다.

<개정 2012. 1. 27>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11. 2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11. 22>

3.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신설 2017. 11. 22>

4.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11. 22>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채무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1. 5. 1.>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21. 5. 1.>

제13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

② 제1항을 공시함에 있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되기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끝난 후 3월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③ 학교회계 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추가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2, 개정 2022. 3. 25.>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 법인사무를 위하여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이사는 증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8. 2>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③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은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3항에 의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 중 1인(이하 “개방감사”라 한다)은 같은항에 의해 추천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② 법인은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 감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개방감사의 경우에는 1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본조 신설 2010. 8. 2. 개정 2021. 5. 1.>

제18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2>

제19조(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8. 1.>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법인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

③ 추천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

④ 추천위원장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등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 회의일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

⑦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8.2.>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④ 감사와 감사 또는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⑥ 이사 중 1인 이상은 하나금융지주에서 추천하는 하나금융그룹 재직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1. 5. 1. 개정 2022. 3. 25.>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2022. 3. 25.>

제22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5. 1.>

제2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전문개정 2021. 5. 1.>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4. 20., 2021. 5. 1.>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2>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1. 5. 1.>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5. 1.>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5. 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闕位) 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31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미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해산과 합병 <개정 2017. 11. 22>

제32조(해산사유)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목적 달성의 불가능
2.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
3. 파산
4. 관할청의 해산명령

② 해산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7.11.22. , 2018. 8. 1.>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2>

제35조(합병절차) ①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제 5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개정 2017. 11. 22>

제36조(자격) 교원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제37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 임용한다. <개정 2017.11.22>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교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22>

④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 임용한다. 단,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학교장은 교원을 휴직 또는 복직발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2022. 3. 25.>

⑤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된다)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준용하여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신설 2022. 3. 25>

⑥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원채용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22>

제38조(기간제 교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39조(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7.11.22>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17. 11. 22>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제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22>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22>

3. 제4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1.>
 4. 제4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5. 제40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6. 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 6의2. 제40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7. 제40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22>
 8.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11.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 11. 22>
- ②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1. 22>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7. 11. 22>

제42조 2(휴직교원의 처우) 휴직교원의 보수, 수당 등 처우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5.>

제43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44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수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와 같은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6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

제47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62세로 한다. 단 교장을 초빙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

제48조(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제49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접·기재를 하거나 거짓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1.1. 전문개정 2021. 5. 1.>

제50조(명예퇴직) 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 3 관 징 계

제51조(징계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8.8.1. 전문개정 2021. 5. 1.>

제5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1. 강등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여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
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前科)에 대하여 훈계하고 뇌우치게 한다.

<전문개정 2021. 5. 1. 개정 2022. 3. 25.>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6
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포함하되 목록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2. 3. 25.>

제54조(외부위원의 임기 등)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55조(징계의결의 요구)임용권자는 교원 중에서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56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5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8.1.>

제58조(징계의결)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협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의 징계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의 감경기준은 사람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2 내지 제25조의 4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
 ④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교육청의 징계심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2. 3. 25.>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6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8.1.>

제 4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6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제6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2>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신규교사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학교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6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사 무 직 원

제 1 관 임 용 <본관 신설 2018. 8. 1.>

제69조(자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기술직을 포함한다.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11. 2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7. 11. 22>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 11. 22>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 11. 22>

7.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제70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전형으로 총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 등 공개전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8. 1.>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단, 학교소속 계약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8. 8. 1.>

④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보수 등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제 2 관 복 무 <본관 신설 2018. 8. 1.>

제71조(복무의무) 일반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직원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다.
2. 일반직원은 체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일반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일반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일반직원은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법인 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1. 5. 1.>
6. 일반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일반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8. 일반직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8.8.1.>

제72조(위임 규정)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직원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8.1.>

제 3 관 신분 보장 및 사회보장 <본관 신설 2018. 8. 1.>

제73조(당연퇴직)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전문개정 2022. 3. 25.>

제74조(휴직의 사유) ① 일반직원이 정관 제40조제1항부터 10호, 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인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인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5조(휴직의 기간) 일반직원의 휴직기간은 정관 제41조제1호부터 9호, 11호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6조(휴직직원의 신분) 휴직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관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7조(직위의 해제) ①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2.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중대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교육청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이거나, 해당 비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월의 범위에서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4 관 징 계 <본관 신설 2018. 8. 1.>

제7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전책으로 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강등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전책은 전과(前科)에 대하여 훈계하고 뇌우치게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2022. 3. 25.>

제80조(직원징계위원회 설치) ① 제84조의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장이 임용하는 직원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이 임용하는 직원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소속의 교직원, 법인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8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1. 5. 1.>

제82조(준용 규정) ① 일반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정관 제51조(징계의 사유), 제55조(징계의결

의 요구), 제56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제5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58조(징계의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교육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1. 5. 1.>

제 6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3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2>

제 2 절 고등학교

제84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일반직원의 직급 및 정원

제86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7 장 학교운영위원회 <본조 신설 2010.8.2>

제8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8조(지원, 지도 등)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칩

제90조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이 법인은 이 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5.>

제91조 (청렴의무) 이 법인의 임직원 및 하나고등학교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3. 25.>

제92조 (학교법인 하나학원·하나고등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9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학교법인 하나학원 임직원·하나고등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5.>

제93조 (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을 배포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학교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단, 법령과 이 정관 및 규정에 공고의 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8. 1.>

제9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승유	43. 8.19	4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4-4 더미켈란 605호
이사	김정래	52. 2.11	2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5 신도림4차 e-편한세상 1113-2402호
이사	양교석	42.10.27	4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 한신아파트 303동 101호
이사	이태준	45. 2. 1	4년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6-187
이사	임창섭	54.12.12	2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1 주공연립 131-203
이사	장하원	59. 6.23	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4-27 롯데캐슬 포레스트 101호
이사	정운찬	46. 2.29	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1008-2 래미안방배아트힐 110-2002
감사	임영호	59. 1. 5	1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3동 1307호
감사	조정남	41.11.20	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8 SK 리더스뷰 1504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방이사 관련 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경영학교 설립 후 최초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은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용된 교감은 정관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개정 2017. 11. 22., 2019. 11. 1.>

직군	직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일반직	행정	1	1		1			3
	계	1	1		1			3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개정 2019. 11. 1., 2022.3.25.>

직군	직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일반직	행정		1	1	2	4	4	12
	사서					1		1
	사감			1	2	3	6	12
	계		1	2	4	8	10	25
기술직	식품위생				1			1
	방송·전산						1	1
	계				1		1	2
합계			1	2	5	8	11	27